

의안번호	제 30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 
일괄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2년 9월 7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#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0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22년 9월 7일  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기 이전 부서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함으로써 우리 도 자치법규의 정합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여성가족정책관(또는 여성정책관)에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으로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 (안 제1조~제10조)
  -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
  - 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조례
  -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  -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
  -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  -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
  - 충청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
  -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·운영 조례
  -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
  -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
- 사회적경제과에서 소상공인정책과로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 (안 제11조)
  -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련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##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

제1조(「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여성정책관”을 “양성평등가족정책관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여성가족정책관”을 “양성평등가족정책관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여성정책관”을 “양성평등가족정책관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제1호 중 “여성가족정책관”을 “양성평등가족정책관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제2항 중 “여성가족정책관”을 “양성평등가족정책관”으로 한다.

제6조(「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2항제2호가목 중 “여성가족정책관”을 “양성평등가족정책관”으로 한다.

제7조(「충청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여성가족정책관”을 “양성평등가족정책관”으로 한다.

제8조(「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·운영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제3항 중 “여성가족정책관”을 “양성평등가족정책관”으로 한다.

제9조(「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복지여성분과의 부서란 중 “여성정책관”을 “양성평등가족정

책관”으로 한다.

제10조(「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여성정책관”을 “양성평등가족정책관”으로 한다.

제11조(「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분야별란 중 “사회적경제과”를 “소상공인정책과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# 3.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(실무협의회 설치 및 구성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 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, 위원장은 <u>여성정책관</u>이 된다.</p> <p>③·④ (생 략)</p>	<p>제15조(실무협의회 설치 및 구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양성평등가족</u> <u>정책관</u>----- ----- 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
### 4.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(생 략)</p> <p>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 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1. 행정부지사, 보건복지국장, <u>여성가족정책관</u>은 당연직으로 한다.</p> <p>2. ~ 9. (생 략)</p> <p>③ ~ ⑦ (생 략)</p>	<p>제9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양성평등가족정책관</u>----- --.</p> <p>2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
## 5.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
현행	개정안
제3조의2(위원회 구성) ① (생략)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<u>여성가족정책관</u> 이 된다. ③·④ (생략)	제3조의2(위원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양성평등가족정책관</u> ----- <u>책관</u> ---. ③·④ (현행과 같음)

## 6.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

현행	개정안
제30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생략) ②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. 1. (생략) 2. 정책복지위원회 가. <u>여성가족정책관</u> , 기획관리실, 보건복지국, 충청도립대학교,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. ~ 바. (생략) 3. ~ 6. (생략) ③ (생략)	제30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가. <u>양성평등가족정책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나. ~ 바. (현행과 같음) 3. ~ 6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


### 7. 충청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구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학교자치과장, 충청북도경찰청여성청소년과장, <u>여성가족정책관</u>,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	<p>제3조(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양성</u> <u>평등가족정책관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
### 8.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·운영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6조의2(운영위원회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, <u>여성가족정책관</u>, 원장으로 한다.</p> <p>④ ~ ⑨ (생략)</p>	<p>제6조의2(운영위원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양성평등가족정책관</u>----- --.</p> <p>④ ~ ⑨ 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【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】

제3조(보좌기관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 밑에 대변인을 둔다.

② 행정부지사 밑에 감사관 및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을 둔다.

③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도지사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특별보좌관을 두며, 정책특별보좌관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.

제6조(양성평등가족정책관) ①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

③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.

1. ~ 32. (생략)

제10조(경제통상국에 두는 과) ① 경제통상국에 경제기업과, 투자유치과, 일자리정책과, 소상공인정책과 및 국제통상과를 둔다.

② 경제통상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, 경제기업과장·일자리정책과장·소상공인정책과장·국제통상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, 투자유치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③ ~ ⑤ (생략)

⑥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~ 35. (생략)

⑦ (생략)

##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### 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

### ○ 사 유

- 본 조례안은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기 이전 부서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

### ○ 작성자

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이수현